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세칙

여수시도시공사 개정 2014.4.22. 세칙 제17호

제정 2017.11.17. 세칙 제5호

개정 2022.1.17. 세칙 제25호

일괄개정 2024.5.7. 세칙 제38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각종계약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17.>

②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4. 4. 22., 2022. 1. 1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공무원과 다른 공사·공단·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공단의 재무관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부장**, 서기는 계약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해당하는 계약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자 또는 관련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작성(별지 제4 호서식) 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이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직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세칙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5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24. 5. 7.>

이 세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7조 관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요청서

관리번호		구 분 (해당내용에 √표시)	공사, 물품, 용역
건 명			
추정가격	천원	발주시기	년 월
심 의 (자문) 요청내용			
심의(자문) 사유(근거)			
첨부서류	○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 그 밖에 심사 또는 자문에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자문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발주부서명 : (직인)			

[별지 제2호(제6조 관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제6조 관련)]

회 의 록

회의일시			장 소	
참석현황	현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별지 제4호(제7조 관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서

관리번호	
건명	
심의(자문) 요지	
심의(자문) 결과	

[별지 제5호(제8조 관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발주부서	건명	심의결과	비고